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범연 의원 대표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360
----------	-----

발의연월일 : 2017년 9월 6일

발의자 : 이범연 의원

찬성자 : 박찬원, 함명섭
박종욱, 장문혁
임영순 의원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중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17년 9월 11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나.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심 사 제 획

1. 활동목적

-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신속한 의사진행

2. 심사안건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

3. 활동기간

- 2017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4. 구 성

- 박찬원 의원, 함명섭 의원, 박종욱 의원, 장문혁 의원,
이범연 의원, 임영순 의원

5. 운영계획

일시	차 수	내 용	비고
2017. 9.11 (월)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사특별 위원회 (10:30)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설치) 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의 심사를 포함한다.

③ 의회는 의원윤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활동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한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